



국제
협회

헌장 및 부칙

INTERNATIONAL

2011년 7월 8일 개정

국제협회

목적

봉사단체로서의 라이온스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한다.

라이온스클럽 활동사항을 조정하고 클럽운영을 표준화 한다.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 시킨다.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 시킨다.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 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 시킨다.

소망서

지역사회와 인도주의봉사 부문에서 세계적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

임무서

라이온스클럽을 통해 자원봉사 하는 방법을 알리고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부응하며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킨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헌장 및 부칙

2011년 7월 8일 개정

헌장

제1조 - 명칭 10

제2조 - 목적 10

제3조 - 회원 10

제4조 - 회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제 1항 - 회장 11

제 2항 - 회장과 명칭 사용 11

제 3항 - 색채 11

제 4항 - 슬로건 11

제 5항 - 모토 11

제5조 - 임원 및 국제이사회클럽이사회

제 1항 - 임원 11

제 2항 - 회원 및
대의원 신분 11

제 3항 - 헌장지역별 국제이사회 구성 및
국제이사 선출 12

제 4항 - 선거, 임원의 임기, 공석 12

제 5항 - 국제이사회 권한 14

제 6항 - 회의 15

제 7항 - 투표권 15

제 8항 - 보수 15

제 9항 - 해임 15

제6조 - 국제대회 및

대의원

제 1항 - 개최일 및 장소 15

제 2항 - 대의원 배정 15

제 3항 - 대의원 투표 16

제 4항 - 정족수 17

제 5항 - 대리투표 17

제7조 - 지구조직 17

제8조 - 클럽

제 1항 - 클럽차터 17

제 2항 - 클럽회원자격 17

제9조 - 비상적립금

제 1항 - 기금의 설정 18

제 2항 - 기금의 원금 18

제 3항 - 기금의 관리 18

제10조 - 개정	
제 1항 - 개정 절차	19
제 2항 - 통지	19

부칙

제1조 - 명칭 및 회장	20
---------------	----

제2조 - 국제임원 선출	
제 1항 - 국제대회 선출	20
제 2항 - 제2부회장 후보자 자격	20
제 3항 -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	21
제 4항 - 후보자 추천 및 증명	22
제 5항 - 대표권	23
제 6항 - 국제 지명위원회	24

제 3조 - 임원의 임무	
제 1항 - 회장	25
제 2항 - 부회장	25
제 3항 - 행정임원	25

제4조 - 국제이사회 분과위원회	
제 1항 - 상임위원회	25
제 2항 - 자격증명, 의사규정,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26
제 3항 - 특별 혹은 자문위원회	26
제 4항 - 위원장, 결원	26
제 5항 - 지명제한	26

제5조 - 국제이사회 회의	
제 1항 - 정기회의	27
제 2항 - 임시회의	27
제 3항 -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	27
제 4항 - 정족수	27
제 5항 - 집행위원회	28

제6조 - 국제대회	
제 1항 - 대회에 관한 국제이사회의 권한	28
제 2항 - 공식통고	28
제 3항 - 대회임원	28
제 4항 - 당선총재 세미나 - 참석경비	29

제7조 - 국제구좌	
제 1항 - 회계감사	29
제 2항 - 동결자금	29
제8조 - 지구조직	
제 1항 - 지구조직의 권한	30
제 2항 - 지구의 최저조건	30
제 3항 - 지구분할	30
제 4항 - 복합지구 협의회	31
제 5항 - 복합지구 협의회 권한	31
제 6항 - 지구임원회	32
제 7항 - 지구임원회 회의	32
제9조 - 지구대회 및 선거	
제 1항 -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32
제 2항 - 대회의 권한	33
제 3항 - 지구대회 클럽대의원 배정	33
제 4항 -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	34
제 5항 - 지구임원 입후보 절차	34
제 6항 - 지구총재/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35
제 7항 - 동점득표 처리	39
제 8항 - 지구대회 보고	40
제10조 - 지구임원의 임무	
제 1항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40
제 2항 - 지구임원	40
제11조 - 클럽회원	
제 1항 - 클럽조직	45
제 2항 - 클럽명칭	45
제 3항 - 신청절차	45
제 4항 - 클럽의 의무	45
제 5항 - 스태티스 퀴/차터 취소	46
제 6항 - 클럽해산	46
제 7항 - 회원분류	47
제 8항 - 이중회원	49
제12조 - 입회비 및 회비	
제 1항 - 회원보고서	49
제 2항 - 반기분 국제회비	49
제 3항 - 가산금	51
제13조 - 의사규정과 절차	51

제14조 - 개정	
제 1항 - 개정 절차.....	52
제 2항 - 통지.....	52
제 3항 - 발효일.....	52
참조 A - 회원 분류표.....	53

집행임원
국제이사
2011-2012년도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 clubs

INTERNATIONAL PRESIDENT
WING-KUN TAM
Hong Kong, China

IMMEDIATE PAST PRESIDENT
SID L. SCRUGGS III
Vass, North Carolina, USA

FIRST VICE PRESIDENT
WAYNE A. MADDEN
Auburn, Indiana, USA

SECOND VICE PRESIDENT
BARRY J. PALMER
North Maitland, Australia

DIRECTORS

YAMANDU P. ACOSTA
Eufaula, Alabama, USA

DOUGLAS X. ALEXANDER
Brooklyn, New York, USA

DR. GARY A. ANDERSON
Grand Rapids, Michigan, USA

NARENDRA BHANDARI
Maharashtra, India

JANEZ BOHORIC^v
Kranj, Slovenia

JAMES A. CAVALLARO
Springfield, Pennsylvania, USA

DR. TA-LUNG CHIANG
Taichung, MD 300 Taiwan

PER K. CHRISTENSEN
Aalborg, Denmark

EDISSON KARNOPP
Santa Cruz Do Sul RS, Brazil

DR. SANG-DO LEE
Daejeon, Republic of Korea

DR. SONJA "SUNNY" PULLEY
Portland, Oregon, USA

KRISHNA REDDY
Karnataka, India

ROBERT G. SMITH
Sacramento, California, USA

DR. EUGENE M. SPIESS
Moore, South Carolina, USA

EDDY WIDJANARKO
East Java, Indonesia

SEIKI YAMAURA
Tokyo, Japan

GUDRUN BJÖRT YNGVADÓTTIR
Gardabaer, Iceland

JOAQUIM ANTONIO CARDOSO BORRALHO
Linda A. Velha, Portugal

MARVIN CHAMBERS
Fillmore, Saskatchewan, Canada

ROBERT E. "BOB" CORLEW
Milton, Tennessee, USA

CLAUDETTE CORNET
Pau, France

DR. JAGDISH GULATI
Allahabad, India

DAVE HAJNY
Ennis, Montana, USA

TSUGUMICHI HATA
Miyagi, Japan

MARK HINTZMANN
Watertown, Wisconsin, USA

PONGSAK "PK" KEDSAWADEVONG
Petchaburi Province, Thailand

CAROLYN A. MESSIER
Windsor Locks, Connecticut, USA

JOE AL PICONE
Brenham, Texas, USA

ALAN T. "TED" REIVER
Wilmington, Delaware, USA

BRIAN E. SHEEHAN
Bird Island, Minnesota, USA

JUNICHI TAKATA
Toyama, Japan

KLAUS TANG
Wied, Germany

CARLOS VALENCIA VALENCIA
Caracas, Venezuela

SUNIL WATAWALA
Katana, Sri Lanka

INTERNATIONAL OFFICE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Phone: (630) 571-5466 • Fax: (630) 571-8890 국제현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라이온스 협회)” 이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봉사단체로서의 라이온스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한다.
- (b) 라이온스클럽 활동사항을 조정하고 클럽운영을 표준화 한다.
- (c)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 (d)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 (e) 지역사회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 (f)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 (g)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h) 지역사회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헌장의 규정하에 적법하게 조직되고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클럽으로 구성된다.

제 4 조 회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제1항. 회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클럽의 회장은 다음과 같다:



제2항. 회장과 명칭사용. 협회의 명칭, 회장 기타의 표식은 부칙에 수시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3항. 색채. 본 협회와 차타를 받은 각 클럽의 색채는 보라색과 금색이다.

제4항. 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슬로건은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이다.

제5항. 모토. 본 클럽의 모토는 “We Serve (우리는 봉사한다)” 이다.

제 5조 임원 및 국제이사회

제1항. 임원.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이상은 집행임원임), 국제이사, 지구총재, 협회의 집행이사, 재무 총장, 총무 (집행이사, 재무총장 및 총무는 행정임원임) 및 국제 이사회가 지명하는 기타의 임원으로 한다.

제2항. 회원 및 대의원 신분. 행정임원을 제외한 본 협회의 임원은 차타를 받은 클럽의 곧 스탠딩 정회원 이어야 하며 국제대회와 소속 지구대회 (단일, 정 및 복합)의 정규대의원이 된다. 그러나 클럽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항. 현장지역별 국제이사회 구성 및 국제이사 선출. 국제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및 다음 방법으로 선출되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매 짝수 해에는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2명,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에서 1명, 유럽으로부터 3명, 동양 및 동남 아시아에서 3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미합중국 및 그 영역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7명 으로 총 17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매 홀수 해에는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2명, 캐나다에서 1명, 유럽에서 3명, 동양 및 동남아시아에서 3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미합중국 및 그 영역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7명으로 총 17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제4항. 선거, 임원의 임기, 공석.

- (a) 집행임원과 국제이사는 본 협회의 국제대회에서 선출된다.
- (b) 행정임원은 국제이사회에서 임명되며 국제이사회 방침에 따른다.
- (c) 지구총재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 (d) 집행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공고가 있는 후부터 차기 국제대회에서 후임자의 당선이 공고될 때까지로 한다.
- (e) 지구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 해의 국제대회 폐회 시부터 차기 국제대회 폐회될 때까지로 한다.

- (f) 국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는 때까지로 한다.
- (g) 당선 또는 지명여부를 막론하고 어떠한 현직 집행 임원도 국제이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후임자로 입후보 할 수 없다.
- (h) 어떠한 국제이사나 지구총재도 자신의 후임자로 계승할 수 없다.
- (i)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원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국제이사회는 잔여임기의 임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 (j) 사망, 사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이사회가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할 때까지 차석 부회장이 회장 대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k) 사망, 사임, 또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부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이사회가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그러나 지명된 부회장은 국제헌장 및 부칙에 의해 상위의 임원직에 선출될 수 있다. 임명된 부회장이 상위의 임원직에 입후보할 경우 현국제이사나 국제 이사를 역임한 자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다.
- (l) 직전회장에 공석이 생길 경우, 후임자가 보충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 (m) 재해나 사고로 이사회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족수에 구에 됨이 없이 잔여 이사회 구성원이 차기 국제대회에서 선거가 행해질 때까지 국제이사회의 임무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 (n) 재해나 사고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장 최근에 국제 회장을 지낸 전직회장이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를 행할 목적으로 10일 이내에 모든 전회장 및 전이사들을 소집한다. 이 회의는 소집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국제본부에서 개최한다. 참석자에게는 협회 감사규정에 의해 적절한 비용이 지급된다.
- (o) 기타 우발 사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잔여 기간 동안 이사회가 공석을 보충할 수 있다.

제5항. 국제이사회의 권한.

- (a) 본 협회의 모든 권한은 명기 또는 암시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에 속하며, 동 이사회는 본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 (b) 국제이사회는
 - (1) 동 이사회 및 본 협회의 모든 임원 및 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통제권, 감독권을 가진다.
 - (2) 본 협회의 업무, 재산 및 기금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 (3) 차기 회계연도의 수지 예상액을 표시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다. 국제이사회구성 전원의 호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의 찬성이 없으면 예비금을 사용하거나 당 회계연도 예산에 불균등을 초래하거나 차기 년도 예산 또는 예비금에 영향을 주는 지출을 할 수 없다.

제6항. 회의. 국제이사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부칙에 따라 소집하고 개최한다.

제7항. 투표권. 국제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8항. 보수. 국제본부의 집행이사, 재무총장, 총무처장 및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는 임원들을 제외한 모든 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단,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지불한 경비는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감사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제9항. 해임. 선거로 선출된 본 협회의 어떠한 임원도 정당한 사유로 이사회 전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제 6 조 국제대회 및 대의원

제1항. 개최일 및 장소. 본 협회의 연차대회는 매년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연월일과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2항. 대의원 배정. 곧 스탠딩 차터 클럽은 대회 개최 전월 1 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회원 25명마다, 또는 단수 13명 이상에 대하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각 1명을 본 협회의 어떠한 대회에도 출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곧스탠딩 차터클럽도 동 대회에 최소한 1명씩의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출석시킬 권한이 있다. 본 항의 단수란 13명 이상을 말한다.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선임은 클럽회장, 총무 기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임원이 서명한 대의원 자격증명서로 증명된다. 상기한

클럽임원이 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속지구 (단일 또는 정)의 지구총재 또는 당선총재가 서명한 자격증명서에 의해서 자격이 증명되어야 한다. 각 차터 클럽은 대회의 의사규칙에 정해진 대의원 자격증명서 마감시간까지 체납금을 납입함으로써 곧 스탠딩이 될 수 있다.

본 협회의 전회장은 국제대회 및 소속지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감사규정에 따라 전회장의 국제대회 및 소속지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 참가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본 협회의 전이사는 국제대회 및 소속지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회장과 전이사는 각 대회에 소속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이사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명이사로 활동하는 각 전지구총재 및 전협의회의장 및 국제재단 집행위원회의 지명이사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 임기 중에 개최하는 국제대회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지구총재 혹은 전협의회의장은 각 국제대회에 소속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은 임기 동안 개최하는 국제대회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 의장은 국제대회에 소속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항. 대의원 투표. 자격을 증명한 출석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하는 각 임원에 1표, 대회에 제출된 각 의제에 1표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권한을 가진다.

제4항. 정족수. 회의에 참석한 자격을 증명한 출석대의원을 각 총회의 정족수로 한다.

제5항. 대리투표. 대리투표는 클럽, 지구 (단일, 정, 복합) 및 국제 대회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제 7 조 지구조직

라이온스클럽의 영역은 본 부칙에 따라 지구 및 행정 단위로 분할된다.

제 8 조 클럽

제1항. 클럽차터. 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제이사회는 동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모든 클럽을 조직하고 차터를 승인 하는 전권을 가진다.

본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와 방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클럽은 자치권을 가진다.

라이온스클럽은 국제이사회와 방침에 따라 차터가 공식적으로 발부되며 한 단위 클럽으로 인정된다. 라이온스클럽이 차터를 전수한다는 것은 본 협회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함과 동시에 국제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법에 준하여 본 헌장 및 부칙을 해석하고 운영할 것을 의미한다.

제2항. 회원 자격. 소속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덕성과 신망이 있는 성인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입회는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9 조 비상적립금

제1항. 기금의 설정. 협회는 비상적립금으로 알려진 특별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협회의 다른 모든 기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의 원금. 각 회원으로부터 징수되는 연간 국제회비의 일부는 동 기금에 할당되거나 적립금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금의 자산가치의 평가로 늘어나는 수익은 매년 적립금의 원금에 가산된다.

제3항. 기금의 관리. 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 (a) 동기금의 자산은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가 마련하고 국제이사회가 승인한 투자 방침에 따라 투자 및 재투자 되어야 한다. 투자 방침의 목적은 국제협회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손실 수준 이내에서 비상적립 자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b) 한 회계연도의 적립금으로부터 지출은 당 회계연도 첫 날의 적립금 총자산 가격(원금 및 미배당금 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c) 적립금(원금 및/또는 수익)에서의 지출은 구체적인 용도가 국제이사회 전구성원의 3분의 2의 투표로 승인되었을 때에만 행하여 진다. 단, 협회의 필요하나 당 회계연도의 협회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최저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16개 사업 또는 기타 협회의 주요사업, 라이온지 발간 또는 국제 이사회 회의 혹은 국제대회 개최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지출할 수 있다.

- (d) 적립금 (원금 및 /또는 수익)으로부터 지출이 승인되어 그 결과 적립금의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 미만일 경우 국제이사회의 지출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기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만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금은 협회의 전년도 총 경비의 70% 까지 제한하며 잉여금은 일반기금으로 전용한다.

제 10 조 개정

제1항. 개정절차. 본 헌장은 국제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개정에는 대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자격을 증명 받은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로 결의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대회에 상정할 수 없다:

- (a)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 (b) 국제이사회에 제출된 회계연도의 7월 1일자로 국제협회의 클럽 총회원수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결의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제2항. 통지. 개정안은 투표가 행해질 대회의 적어도 30일전까지 라이온지나 협회의 기타 공식 출판물에 게재되어야 한다.

부칙

제 1 조 명칭 및 휘장

어떠한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회원, 라이온스지구, 라이온스 조직 (법인, 자연인, 법인체)과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 지구가 조직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 (법인, 자연인, 법인체)도 현장의 규정 또는 국제이사회방침 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본 협회 및 라이온스 조직의 명칭, 휘장, 기타의 표식을 사용, 제작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기타의 개인 그리고 조직 (법인, 자연인, 법인체, 기타 일체)도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서면 허가 없이 본 협회 및 라이온스클럽의 명칭, 휘장 기타의 표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국제임원 선출

제1항. 국제대회 선거 본 협회의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국제이사 전원은 국제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구 (단일, 정 및 복합)내의 클럽회원은 회장, 제1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항. 제2부회장 후보자 자격

(a) 제2부회장 후보자는

- (1)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 (2)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자로서
- (3) 소속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대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추천 시 국제부칙 제8조 2항에 규정된 지구의 최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4) 소속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의 추천증명서를 획득한 자라야 한다. 이 추천증명서는 후보자가 제2부회장에 선출된 후 본 협회의 상위 임원직을 맡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 (b) 본 부칙 혹은 현장의 규정에 따라 임원직에 공석이 생겨 보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제1부회장직에, 제2부회장과 제1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국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본 부칙 혹은 현장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나 부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현국제이사나 국제이사를 역임한 자만이 그 공석을 보충 하는데 지명될 수 있다.

제3항.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 국제이사 후보자는

- (a) 곧 스탠딩 클럽의 곧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 (b) (1) 본 협회의 정지구 지구총재로서 1년 또는 과반기 임기를 만료했거나 만료 예정자, 또는
- (2) 임기중 혹은 후에 곧 스탠딩 클럽수가 20개에 달했거나 정지구로 승격한 잠정지구 혹은 (2) 10년 이상된 잠정지구의 총재로서 1년 또는 과반기를 역임한 자라야 한다.

- (c) 소속지구 (단일, 정 및 복합)대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추천 시 국제부칙 제8조 2항에 규정된 지구의 최저 조건을 충족 시킬 경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d)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의 추천 증명을 받은 자.

제4항. 후보자 추천 및 증명.

- (a)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임원직이 보충되는 경우(이 경우의 입후보에는 추천장도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를 제외하고 지구총재 이외의 모든 국제임원 후보자의 추천 증명은 국제협회 양식에 의거 각 단일 또는 정지구의 총재 및 사무총장 그리고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본 추천 증명서는 추천된 국제이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추천된 제2부회장에 대한 투표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90일 전까지 국제본부에 도착 되어야 한다 추천은 팩스나 이메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상기 증명서가 팩스나 이메일로 발신한 후 3일 이내에 우송될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추천 증명서가 제출되어 국제본부에 접수될 때까지 여하한 추천도 무효이다.

어떠한 추천도 후보자로서 증명을 받고 자격이 있는 추천에 이은 2회의 국제대회까지 유효하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 (i) 추천을 철회할 수 없으며, (ii) 다른 추천은 무효가 되며, (iii) 사망, 자격상실, 입후보 취소 시에는 추천결의가 무효이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는 이 이상의 추천증명이 필요 없다.

모든 추천은 1회 혹은 2회이든 국제임원 후보자의 지명을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단일지구 혹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복합지구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어떠한 후보자도 먼저 후보자의 소속지구로부터 추천을 확보해야 한다.

- (b) 추천증명서에는 1개의 임원직을 명기해야 한다. 후보자는 추천증명서에 명기된 임원직 이외 임원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어떠한 지구 (단일, 정 및 복합)도 국제이사회 의 임원직을 위한 후보자를 1명 이상 추천할 수 없다.

제5항. 대표권.

- (a)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클럽을 갖고 있는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에서는 1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 14명의 이사 중 1명 또는 캐나다 이사 중 1명으로 계산한다. 동 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30일전까지 본 부칙 혹은 헌장에 따라 추천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국제본부로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 (b) 동일지구 (단일 혹은 복합)에서 2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할 수 없다. 이사가 선출된 지구에서 타 지구로 이주할 경우, 그 임기는 다음 연차대회 폐회 시에 끝나며 후임자를 동 대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c) 회장 또는 부회장과 이사를 동일 지역에서 동시에 선출할 수 있으나 현장에 규정한대로 동일 단일지구 또는 복합지구에서는 동시에 선출할 수 없다.

제6항. 국제 지명위원회. 국제대회 또는 대회 전 180일 이내에 회장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국제협회 임원은 지명위원에 임명될 수 없으며 동일 단일지구 또는 복합지구 내 클럽 회원 중에서 2명을 임명할 수 없다. 회장은 대회 최종일에 행하여지는 선거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지명위원회는

- (a) 후보자들로부터 적법한 추천증명서를 받아 본 협회 법률부 부장에게 제출하고 법률부 부장으로부터 후보자의 법적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 (b)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성명의 순서를 결정한다.
- (c) 유자격 후보자 전원의 성명을 대회총회에 제출한다.

선거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법으로 행하고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어떠한 임원직에 있어서도 동점 득표일 경우, 그 연도 이사회가 그 중에서 1 명을 선출한다.

국제대회에서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자격을 심사 받는다. 국제이사회에서 정한 등록비를 지불하고 등록을 필한 대의원, 교체대의원들은 국제대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 3조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 본 협회의 모든 대회와 모든 국제이사회 회의를 주관한다. 국제협회의 업무와 활동을 감독하고 기타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항. 부회장. 회장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석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항. 행정임원. 국제협회 집행이사 및 재무총장 그리고 총무처장 그 밖의 국제이사회가 임명한 임원은 국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기 할당된 임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국제이사회 분과위원회

제1항. 상임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한다. 단, 장기기획위원회는 7명 이하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국제이사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a) 감사
- (b) 헌장 및 부칙
- (c) 대회
- (d) 지구 및 클럽봉사
- (e) 재정 및 분부운영
- (f) 지도력
- (g) 장기기획
- (h) 회원개발
- (i) 홍보
- (j) 봉사사업 및
- (k)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위원회.

제2항. 자격증명, 의사규정,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각 국제대회 시 또는 대회 전 180일 이내에 회장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격 심사 위원회, 결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대회의 60일 이전에 5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된 의사규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항. 특별 혹은 자문위원회. 회장은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 위원회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제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특별위원회의 경비는 지불되지 아니한다.

제4항. 위원장, 결원. 회장은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결원 전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제5항. 지명제한. 본 부칙 혹은 헌장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지명권을 행사 하는데 있어서 회장은 전국제임원을 위원에 지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그 총수는 한 회계연도에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지명제한은 직전회장과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른 지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 지명제한은 직전회장과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른 지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국제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후임 회장은 상기 제한 총수를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전국제임원을 위원으로 재지명 할 수 있다. 지명되는 위원 중에서 최소한 1명은 국제회장의 소속클럽이 속한 현장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클럽 회원이어야 한다.

제 5 조 국제이사회 회의

제1항. 정기 회의. 국제이사회 정기회의는 국제대회 개최 직후 그 도시에서 개최한다. 10월 또는 11월 및 3월 또는 4월의 정기회의는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다. 마지막 정기회의는 국제대회가 열리는 도시에서 개최하며 대회 개최 전에 폐회한다.

제2항. 임시회의. 국제이사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다. 또 5명의 이사가 서면 (편지, 이메일, 우편, 팩스 혹은 유선 포함)으로 요청할 때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소집한다. 이 경우 마지막 요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보가 되고 20일 이내에 임시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국제 대회 시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본부에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기한 임시회의의 회의 소집 통지서를 이사회 각 구성원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제3항. 우편으로 처리되는 업무. 국제이사회는 우편(서한, 이메일, 팩스, 유선포함)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그 처리는 이사회 전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문서상 찬성 없이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 처리는 회장 또는 5명의 이사에 의해서 제안될 수 있으나 문서 발송 이후 30일 이내에 국제 본부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문서발송은 그 기한에 맞도록 가장 신속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제4항. 정족수. 본 부칙 혹은 헌장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모든 회의에서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제5항. 집행 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회장, 직전 회장, 각 부회장과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1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동 이사회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이사회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변경,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의 정족수는 동 위원회 멤버의 4명이며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전화상의 회담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이때는 4명이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과반수 결정을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한다. 단, 지구총재직에 공석을 보충하는 경우 동위원회는 전화회담 이외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 이 경우 4명이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과반수 투표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제6조 국제대회

제1항. 대회에 관한 국제이사회의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제대회의 일체 사항은 이사회가 관리, 통제, 감독한다.

제2항. 공식통고. 회장 또는 그 지명인은 대회 개최일로부터 5일내지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개최장소, 일시를 공표하며 국제협회의 공식출판물에도 발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회임원. 본 협회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처장, 재무총장은 국제대회의 임원이 된다. 회장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대회에 필요한 기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항. 당선총재 세미나 참석 경비. 국제이사회는 감사규정에 따라 당선총재(선출 혹은 임명된)가 세미나에 참석할 목적으로 사용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제 7 조 국제구조

제1항. 회계감사.

- (a) 국제이사회는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국제협회의 제장부 및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 (b) 국제이사회는 매년 요약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청이 있을 시 이를 클럽에 제공한다.
- (c)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항. 동결자금.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이사회가 결정한 통화로 협회자금이 어떠한 국가 또는 영역에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이사회가 전구성원의 3분의 2 찬성투표로 그 나라 또는 지역의 회원, 클럽 및 지구에 대해 본 헌장 및 부칙에 부여된 권리와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권한을 갖는다. 이 정지는 협회자금 송금이 제한되어 있는 한, 또는 상기와 동일한 투표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서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 8조 지구조직

제1항. 지구조직의 권한. 각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의 지역은 국제이사회가 규정하는 지구 및 행정 단위로 분할한다.

제2항. 지구의 최저조건. 지구는 국제이사회 의 3분의 2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35개 이상의 곧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및 1,250명 이상의 곧 스탠딩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3항. 지구분할. 복합지구가 되길 희망하는 단일지구 그리고정지구를 추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존 정지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단일지구는 단일지구대회에서 결의를 받고 복합지구는 해당 정지구 대회와 복합지구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모든 정지구의 경계선을 표시한 지도와 각 예정 정지구에 속할 라이온스 클럽의 명단과 함께 국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제부칙 제8조 2항에 규정된 최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당 정지구는 지구대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각 지구분할은 정지구가 최소 35개 이상의 곧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및 1,250명 이상의 곧 스탠딩 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제이사회에서 고려한다. 단, 복합지구내 정지구 숫자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사회가 분할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클럽 및/또는 회원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가 지구 분할안을 승인했을 경우 분할을 승인한 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 폐회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예정 정지구에 소속한 클럽의 대의원들은 이사회가 분할안을 승인한 후 국제대회 이전에 분할될 지구(단일,

정 및 복합)의 연차대회와 일련해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하고 현장과 부칙을 채택해야 한다. 만일 기존 지구를 재편성하는 경우, 상기 정지구를 구성하는 클럽의 대의원들은 복합 지구연차대회에 참석하는 정지구의 등록된 대의원의 회의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제4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구의 지구총재가 총재협의회를 구성한다.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할 전지구총재를 1명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복합지구현장 및 부칙에 임의로 1명 혹은 그 이상의 직전총재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협의회의장을 포함한 전지구총재 수가 지구총재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협의회의장을 포함한 총재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협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국제협회의 현 또는 전회장, 부회장, 현 또는 전이사를 투표권 없는 고문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복합지구 현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협의회의장은 그 임직을 수임할 때 전지구총재 이어야 한다. 협의회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직을 재임할 수 없다.

제5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본 현장 및 부칙의 규정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의 업무를 관리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회의를 개최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승인하며 각 복합지구 현장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6항. 지구임원회. 각 단일 및 정지구는 지구총재를 의장으로 하고 직전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및 해당 단일, 정 또는 복합지구 현장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 지역부총재, 지대 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과 기타 회원으로 지구 임원회를 구성한다. 단, 각 지구총재는 임기 동안 지역부총재직의 활용여부에 따른 결정권을 가진다.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지구총재 임기 중에 지역부총재직은 공석으로 둔다. 각 지구(단일, 정 또는 복합)는 지구현장 및 부칙에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를 선출 임원으로 규정하며, 그 임무는 국제 이사회가 결정한다. 지역부총재 또는 지대 위원장직에 선출 또는 임명될 클럽회원은 소속클럽이 해당 지역 또는 지대내의 클럽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7항. 지구임원 회의. 지구임원회의는 각 지구 현장 및 부칙에 따라 개최한다. 지구임원회의에서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지역부총재(지구총재 임기 동안 지역 부총재직이 활용될 경우),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각 지구(단일, 정 및 복합)의 현장 및 부칙에 규정된 기타 지구 임원회 구성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9조 지구대회 및 선거

제1항.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각 단일, 정지구 연차대회는 매년 국제대회 개최 30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각 복합지구 연차대회는 매년 국제대회 개최 15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각 단일 및 정지구는 본 부칙 혹은 헌장에 따라 지구총재를 선출 하여야 한다. 복합지구대회에서 정지구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회합은 본 항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정지구 연차대회로 간주할 수 있다. 각 대회의 일시 및 장소는 각 단일, 정 또는 복합지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항. 대회의 권한. 지구연차대회(단일, 정 및 복합)는 본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문제에 적절한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단일 및 복합지구대회는 국제협회에 대한 제안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제3항. 지구대회 클럽 대의원 배정. 협회와 지구(단일, 정 및 복합)에서 곧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대회개최 전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마다 그리고 단수 5명 이상에 대해 대의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곧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최소한 1명씩의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참석 시킬 권한이 있다. 더욱이 각 지구(단일, 정 및 복합)는 지구헌장 및 부칙으로 상기 클럽대의원 정수와 별도로 지구 내 클럽에 소속한 각 전총재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자격이 증명된 각 출석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 될 임원에 대하여 1표를, 당 대회에 상정될 각 의제에 대하여 1표를 본인의 의사대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본 항의 단수란 5명 이상을 의미한다. 새로 조직된 클럽과 대회개최 전에 신입회원을 가입시킨 클럽은 국제협회의 기록에 최소한 1년

1일간 클럽에 재적한 회원 수에 기초를 두고
대의원 수를 정한다. 각 클럽은 대회 의사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이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곧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제4항.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 지구총재
후보자는

- (a)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곧 스탠딩
클럽의 곧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 (b) 소속클럽 또는 단일,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 (c) 소속 지구의 지구 제1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d) 현직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총재직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경우, 혹은
지구연차대회 시에 지구 제1 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 본 부칙 또는 헌장에 규정
된 지구 제2 부총재 자격을 구비하고
지구임원회 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추가로 1년을 역임한 경우에는 본 조
(c) 항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지구임원 입후보 절차. 국제임원에
출마하기 위한 의사표명 시기, 방법, 추천에 관한
절차는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본 헌장에서 규정된 이외의
자격을 추가 하지 못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에는 본 협회의 각 회계연도
내에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6항. 지구총재/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절차.

- (a) 지구총재. 지구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지구총재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과반수란 공백 투표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이상을 의미한다.

지구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해당지구(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지구총재의 선거 결과는 국제이사회에 제출된다 보고된 지구총재의 선거 결과는 국제이사회에 제출된다. 보고된 지구총재의 선거 결과는 이사회방침에 정해진 국제이사회 규정에 따라 항의가 제기되거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 국제이사회에서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항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구총재의 임명 또는 선출은 국제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만일 지구가 자격을 갖춘 지구총재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선출된 지구총재가 사망하거나 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취임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국제이사회에 의해서 당선 지구총재가 지병이나 기타로 인하여 지구 총재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지구총재 선출결과로 이의나 법적 조치가 취해져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명시된 시기와 방법대로 국제이사회에서 지구총재를 임명한다.

- (b)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1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1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지구 제1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지구 제1부총재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차기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임기를 마치며 연임하지 못한다. 지구 제1부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해당지구 (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지구 제1부총재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구 제1부총재 후보자는

- (1)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곧 스탠딩 클럽의 곧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 (2) 소속클럽 또는 단일,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 (3) 소속 지구의 지구 제2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4) 현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에 입후보하지 않았거나 지구 연차대회를 기준으로 지구 제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헌장이나 부칙에 정한 지구 제2부총재 자격을 갖춘 클럽회원이면 누구나 본 항(3)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 (c)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2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지구 제2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지구 제2부총재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차기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임기를 마치며 연임하지 못한다. 지구 제2부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해당지구 (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지구 제2부총재 선거 결과는 소속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구 제2부총재 후보자는

- (1)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곧 스탠딩 클럽의 곧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 (2) 소속클럽 또는 단일,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 (3) 지구 제2부총재 수임시
- (a)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 임기를 역임 하고 클럽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 (b) 지대위원장, 지역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을 전임기 또는 과반기 임기를 역임했으며
 - (c) 위의 어느 직책도 겸직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d) 지구총재/지구 제1부총재 공석. 본 부칙 혹은 헌장에 의거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본 항 (e) 에 따라 국제이사회에서 공석을 채울 때까지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총재 대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며, 지구 제1총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지구 제1 또는 제2 부총재직이 공석이 된 경우,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총원 된다.
- (e) 지구총재 총원 절차. 국제이사회는 헌장에 의해 지구총재 임기 전에 지구총재를 임명한다. 이러한 경우에 임명된 총재는 선출된 지구총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총재 경비는 감사규정에 의해 지급된다. 본 부칙 혹은 헌장에 따라 이와 같은 국제이사회의 임명은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혹은 사무 겸 재무총장, 지구 내 군 스탠딩 클럽의 군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회장, 전이사, 전지구총재 전원이 초청된 회의의 결의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 결의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상기 회의는 국제이사사회로부터 통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개최되어야 한다. 회의를 통지하는 일은 직전총재의 의무이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지구 총재를 역임했던 전지구총재가 수행하며 의장으로서 동 회의를 진행한다. 동 의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참석자의 명단과 발송했던 회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국제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의 통지서를 받은 자격을 갖춘 라이온은 상기 회의에 출석하여 지구총재직 임명을 위한 추천자로서 1표를 행사 할 권리를 갖는다.

- (f) **신생지구 총재선출.** 신생 지구 설립 초창기에 지구조직에 필요한 최저 군 스탠딩 클럽 수와 군 스탠딩 회원 수를 확보한 지구는 최초의 대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단, 본 부칙에 규정한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지구조직 이래 3년 후부터 적용되며, 정식 지구가 되기 전에 지구임원으로 활동한 것도 자격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7항. **동점득표 처리.** 지구에서 행한 지구총재 혹은 지구 제1 혹은 제2 부총재 선거에 동점득표가 되어 동 지구 현장 및 부칙에 그 처리 절차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표준 지구현장 및 부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항. 지구대회 보고. 각 단일, 정, 복합지구대회 개최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대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국제본부와 지구총재에게 발송해야 한다.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1부 해당 클럽으로 발송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종료된 회계연도의 지구운영 (단일, 정 및 복합)의 수지명세서를 국제본부, 지구총재 및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내의 각 클럽 총무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 10 조 지구임원의 임무

제1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 국제이사회의 전적인 감독 하에 복합지구의 코디네이터로서 총재협의회를 대표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b) 국제 및 복합지구 프로그램,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지도력 발휘, 방향제시 및 솔루션범.
- (c) 지구총재 간의 화목 및 단합을 촉진시키며 지구총재가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
- (d) 복합지구 연차대회 및 모든 총재협의회 회의 주관.
- (e) 보고서 제출 및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 수행.
- (f) 복합지구 총재협의회가 부여하는 기타 행정 업무 수행.
- (g) 임기 만료 시 복합지구 재정장부, 기금 및 제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

제2항. 지구임원. 지구임원은 다음과 같다.

(a) 지구총재. 국제협회임원으로서 국제이사회의 전적인 감독 하에 소속지구 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한다. 이외에도 지구 내에서 최고행정 책임자로서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 겸 재무총장)과 기타 소속 단일 혹은 복합지구 현장 및 부칙에 명시된 지구임원을 총괄 감독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지구 글로벌 회원증강 팀을 감독하고 타 지구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원증강 및 신생클럽 조직을 지원하도록 격려.
- (3) 지구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을 감독하고 타 지구임원들이 클럽 및 지구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력개발을 지원하도록 격려.
- (4) 국제재단 활동 및 증진.
- (5) 지구대회, 지구임원회의 및 기타 지구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 의장으로서 임무 수행.
- (6)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업무 수행.

(b) 지구 제1부총재 . 지구 제1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하에 지구총재의 최고행정 보좌역할을 담당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글로벌 회원증강 팀의 핵심 지구총재 팀 연락원으로서 회원증강, 신생클럽 조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클럽의 성공을 보장.

- (3) 지구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과 협력하여 지도력개발을 위한 지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4) 지구총재 임무에 정통함으로써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임무 및 직책 수행.
- (5)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행정임무 수행.
- (6) 국제이사회 및 기타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 (7) 모든 지구 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부재 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 (8) 적절한 경우 총재협의회의에 참여.
- (9) 지구예산 편성 시 참여.
- (10)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11)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 내 클럽의 장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c) 지구 제2부총재. 지구 제2 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의 핵심 지구총재 팀 연락원으로서 타 지구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지도력 개발을 추진 및 증진하도록 격려.

- (3)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및 글로벌 회원증강 팀과 협력하여 회원증강을 위한 지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4)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임무 수행.
- (5) 국제협회 지침에 따른 활동과 직무 수행.
- (6) 모든 지구 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부재 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 (7) 지구예산 편성 시 참여.
- (8)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9)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감독 및 지구 내 클럽의 장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 (d) 지역부총재. 지구총재가 임기 동안 지역부총재직을 활용할 경우 지구총재의 지도감독 하에 해당 지역의 최고행정임원으로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소속지역 내 지대위원장 및 지구총재가 지정하는 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의 활동 감독.
 - (3) 지구 내에서 신생클럽 조직 및 약체클럽 강화를 포함한 회원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 (4) 클럽수준에서 지도력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 (5) 지구임원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 (e) 지대위원장. 지구총재 및 지역부총재의 감독 하에 소속 지대의 최고행정 임원으로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소속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동 위원회의 정규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임무 수행.
 - (3) 신생클럽 조직을 포함한 회원증강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 (4) 클럽수준에서 지도력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 (5) 지구임원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 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 (f) 사무총장과 (혹은 사무 겸 재무총장).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활동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사무/재무총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 (g) 기타 지구임원회 구성원.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국제 이사회, 국제헌장 및 부칙 그리고 국제이사회방침에 준하여 소속단일, 정 및 복합지구 헌장과 부칙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클럽회원

제1항. 클럽조직. 라이온스클럽이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정상의 구역에도 지구총재의 동의 및/혹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라이온스클럽이 조직되고 차터가 수여된다. 차터를 받을 클럽지역은 상기 상황에 따라 정하여 진다.

제2항. 클럽명칭. 각 클럽이 소재 하는 행정상 구역명을 붙여야 한다. 단, 행정상 구역 내에 1개 이상의 클럽이 있을 경우, 각 클럽은 해당지역 명칭에 구별되는 명칭을 추가한다.

제3항. 신청절차. 어떠한 단체, 클럽 또는 모임도 국제이사회방침에 따라 라이온스클럽의 차터를 국제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클럽의 의무. 각 클럽이 곧 스탠딩을 유지하려면 하기를 이행한다.

- (a)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국제회비, 지구(단일, 정 및 복합)회비 및 기타 클럽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최저 연간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한다.
- (b)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정규 보고서를 국제본부로 제출한다.
- (c) 헌장, 부칙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른다.
- (d)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클럽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클럽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5항. 스태터스퀴/차터 취소. 본 협회의 의무를 태만히 한 클럽은 국제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또는 지구총재의 요청에 의해 활동정지 처분을 받거나 차터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 이사회의 조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클럽은 권리와 특권이 정지된다.

제6항. 클럽해산. 어떠한 클럽도 본 협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해산은 국제이사회의 인정함으로써 발효한다. 해산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유효하다. 협회에 미납금을 납부하고 클럽의 기금 및 재산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차터를 반납하고 클럽의 명칭에 “라이온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권리 및 협회의 휘장 및 기타 표식 사용권을 포기할 때까지 이사회는 해산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7항. 분류. 라이온스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이사회의 승인 하에 다음 중별로 분류한다.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 자유회원, 우대회원 이다. 각 분류별로 부여되는 권리 특권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의무

종별	회의 정기참석	회비(클럽, 지구, 국제)	클럽활동에 참가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언행
정	예	예	예	예
후원	아니오	예	가능할 시에	예
준	제1클럽에 필요 제2클럽에 필요치 않음	클럽회비 지불	가능할 시에	예
명예	아니오	아니오. 클럽에서 소정의 국제 및 지구회비 지불	아니오	예
평생	아니오	지구 및 클럽회비만 지불, 국제회비는 지불치 않음	가능할 시에	예
자유	아니오	예	가능할 시에	예
우대	아니오	예	가능할 시에	예

권리 및 특권

종별	클럽, 지구, 국제임원직 에 입후보	투표권	지구 및 국제대회 대의원 자격
정	예	예	예
후원	아니오	클럽사항만	아니오
준	아니오	지구대회 (제1클럽) 클럽사항만(양자)	아니오
명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평생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경우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경우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경우
자유	아니오	클럽사항만	아니오
우대	아니오	예	예

어떠한 종류의 회원도 라이온스클럽이 정하는 회비를 지불해야 (클럽이 회비를 지불하는 명예회원은 제외) 지역사회 내에서 라이온스클럽의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언행을 해야 한다. 평생 회원은 장래의 국제회비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500 달러를 지불 해야 하며 그 자격은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준하여 승인될 것이다. 전국제회장은 회장의 임기를 종료한 때 회비지불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평생회원이 된다.

제8항. 이중회원. 명예회원 혹은 준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동시에 본 클럽 및 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 12조 입회비 및 회비

제1항. 회원보고서. 각 클럽은 모든 신입회원의 성명을 국제 이사회가 정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국제본부로 보고하며 국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반기분 국제회비.

- (a) 회원 1명당 16달러 87.5센트 (\$16.875)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국통화로 반기분 국제회비를 클럽이 매년 7월 21일과 1월 21일 전에 납입한다. 단, (f) 항과 (g) 항은 제외된다.
- (b) 반기분 국제회비는 각 클럽의 6월 및 12월 회원 보고서에 표시된 회원 수에 따라 청구하며 클럽은 늦어도 7월 21일과 1월 21일까지 국제본부에 납입해야 한다. 단 (f) 항과 (g) 항은 제외된다.

- (c) 각 클럽은 회원 1명당 25센트 (\$.25)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국통화로 반기분 국제대회기금을 매년 7월 21일과 1월 21일 전에 납입해야 한다. 단 (f) 항과 (g) 항은 제외된다. 이 기금은 본 협회의 국제대회의 경비에만 충당된다.
- (d) 공식잡지가 발행되며 연간 구독료는 4달러 75센트 (\$4.75)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자국통화로 부과하며 반기분 국제회비와 함께 징수한다. 단 (f) 항과 (g) 항은 제외된다.
- (e) 레오클럽과 라이오네스클럽을 스폰서 한 라이온스 클럽은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연회비를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납입해야 한다.
- (f) 국제이사회가 가족회원 프로그램을 채택 함으로써 가족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회비를 적용한다:
 - (1) 첫 번째 가족회원은 상기의 (a), (c), (d) 항에 규정된 반기분 국제회비, 반기분 국제대회 기금 및 공식잡지 연간구독료를 납입해야 한다.
 - (2) 그 다음으로 자격을 갖춘 가족회원은 가족 당 4명의 추가회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기의 (f) (1) 항에 규정된 첫 번째 가족회원이 납입하는 반기분 국제회비의 절반 (1/2)에 상당 하는 국제 회비를 납입한다
- (g) 국제이사회가 채택하는 학생회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생은 상기의(a), (c), (d) 항에 규정된 각 금액 합계의 절반 (1/2) 에 상당 하는 반기분 국제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항. 가산금. 국제이사회는 클럽체납금에 대해 법적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제 13조 의사규정 및 절차

- (a) 본 헌장 및 부칙 혹은 각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또는 각 클럽헌장 및 부칙과 회의진행 규정 또는 각국의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것이 없으면 본 협회와 그 이사회, 이의 관할 하에 활동하는 어떤 위원회, 어떠한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또는 그 관리 하에 활동하는 조직이나 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나 회합의 의사진행 규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정에 따른다.
- (b) 국제이사회는 본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 또는 지구 (단일, 정 및 /또는 복합) 혹은 국제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기인되는 소송, 분쟁 또는 항의에 대해 때때로 항의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c) 본 협회의 회원은 소송, 분쟁 또는 항의가 발생할 때 그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그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
- (d) 각 지구는 수시로 개정되는 본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에 준하여 지구헌장 및 부칙을 채택해야 한다. 모든 지구헌장 및 부칙은 국제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법에 따라 해석한다.

제14조 개정

제1항. 개정절차. 본 부칙은 국제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대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 대회에 자격을 필 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투표로 결의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로 승인되지 않은 한 대회에 상정될 수 없다.

- (a)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 (b) 개정안이 국제이사회에 제출된 회계연도의 7월 1일자로 국제협회의 클럽 총회원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 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 통지. 개정안은 표결이 행해질 연차대회 적어도 30일 전에 본 협회의 라이온지나 기타 출판물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3항. 발효일. 본 헌장 및 부칙은 개정된 후 발효일이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헌장 및 부칙이 채택된 국제대회가 폐회하였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 A 회원 분류표¹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정회원:** 라이온스클럽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이다. 상기 권리와 의무에 국한됨이 없이, 이러한 권리에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권리와 표결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투표권이 포함되며, 의무에는 정기집회의 출석, 신속한 회비 납입, 클럽 활동 참여와 클럽이 지역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가족회원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유자격 가족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학생회원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유자격 학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정회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 b. **자유회원:** 본 클럽 소재지로부터 이주한 회원, 건강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로 클럽의 회합에 정기적인 참석은 불가능하나 클럽에 재적해 있기를 원하는 경우 클럽이사회가 이 상황을 인정한 회원이다. 자유회원의 자격은 6개월마다 클럽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다. 자유회원은 임원이 될 권리와 지구, 국제회의 혹은 국제대회에서 투표할 수 없으나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는 납부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 c. **명예회원:** 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본 클럽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및 본클럽을 위하여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본 클럽에서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본 클럽은 명예회원의 입회비, 지구 및 국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이 가지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d. **우대회원**: 15년 이상 클럽 회원으로 있으면서 질병, 쇠약, 노령, 기타 본 클럽 이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기권한 회원이다. 우대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지구 및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을 비롯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지나 클럽,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e. **평생회원**: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소속클럽과 지역사회, 국제협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15년 이상 정회원으로 있으면서 연령이 70세에 달하였거나 혹은 중병을 앓고 있는 클럽회원은 다음 조건에 따라 평생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본 클럽의 추천.

(2) 소속클럽이 향후의 국제회비 전액을 대신하여 미화 500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협회에 납부.

(3) 국제이사회의 승인.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권을 가진다. 평생회원이 전출을 원하고 다른 클럽으로부터 입회권유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클럽의 평생회원이 된다. 클럽은 평생회원에게 대하여 클럽이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액수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라이온스클럽의 정회원이거나 2007년 6월 30일까지 라이온스클럽의 정회원이 된 전라이오네스는 라이오네스 활동 연수를 전부 평생회원 자격에 적용시킬 수 있다.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라이온스클럽의 정회원이 된 라이오네스는 평생회원 자격에 라이오네스 봉사경력을 적용시킬 수 없다.

- f. **준회원:** 타 라이온스클럽에 우선적인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진 회원이다. 준회원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되며 매년 동 이사회에서 자격 검토를 거친다.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은 월말보고서에 준회원을 보고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 상정된 클럽 안건에 대해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을 대표하여 지구(단일, 정, 잠정 및/또는 복합)대회 혹은 국제대회의 대의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소속클럽, 지구나 국제협회 임원 혹은 지구,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국제 및 지구(단일, 정, 잠정 및 /또는 복합) 회비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클럽에 부과되지 아니하며 준회원이 정회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에 부과된다. 단, 준회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클럽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회비를 준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g. **후원회원:** 지역사회의 성실한 인물로서 클럽의 정회원으로 전적인 활동은 할 수 없지만 클럽과 해당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클럽에 제휴하고자 하는 회원이다. 본 자격은 클럽 이사회의 추천으로 부여된다.

후원회원은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 상정된 클럽 안건에 대해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지구(단일, 정, 잠정 및/또는 복합)대회 혹은 국제대회의 대의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후원회원은 소속클럽, 지구나 국제협회 임원 혹은 지구,복합지구 혹은 국제위원회 임원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후원회원은 지구회비, 국제회비, 기타 소속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국제협회

윤리강령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우의를 돈독히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 CLUBS**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OFFICIAL PUBLICATION OF LIONS CLUBS INTERNATIONAL